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5.

발 의 자 : 박균택·박 정·김주영
김동아·황명선·박홍배
맹성규·박정현·한민수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(安葬)하여 그 충의(忠義)와 위훈(偉勳)을 기리고 선양(宣揚)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0. 1. 1. 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통해 상이등급을 확대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고,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2006. 1. 30.에는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「국립묘지령」, 「국립4·19묘지규정」 및 「국립5·18묘지규정」을 통폐합하여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격상시켜 제정함으로써,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(禮遇)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의 숭고함을 선양(宣揚)토록 하였음.

그러나 현행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은 국가유공자가 오래 전에 저지른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·공헌한 사람들이 그 공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.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한 임무 중 부상, 질병, 장애를 입고 국가의 보상, 보훈, 예우가 부족하여 생계의 어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받던 시기에 저지른 과거 범죄로 인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려는 이 법 취지에 비추어 재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체계 및 예우가 일정 수준 완성된 2006. 1. 30.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도 내란, 외환, 살인,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, 국가유공자의 충의(忠義)와 위훈(偉勳)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(안 제5조제8항 신설).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5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형법」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에 규정된 죄, 제2장 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,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죄, 제31장 약취(略取), 유인(誘引) 및 인신매매의 죄에 규정된 죄,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죄,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(강도살인·치사)와 제339조(강도강간) 및 그 미수죄
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규정된 죄
3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죄
4. 「국가보안법」에 규정된 죄
5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에 규정된 죄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 ① ~ ⑦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제5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 「형법」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에 규정된 죄, 제2장 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,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죄, 제31장 약취(略取), 유인(誘引) 및 인신매매의 죄에 규정된 죄,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죄,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 (강도살인·치사)와 제339조 (강도강간) 및 그 미수죄</p> <p>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</p>

	<p><u>관한 특별법」에 규정된 죄</u></p> <p>3. 「<u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</u> <u>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죄</u></p> <p>4. 「<u>국가보안법」에 규정된 죄</u></p> <p>5. 「<u>군사기밀 보호법」에 규정</u> <u>된 죄</u></p>
--	---